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이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0.

발 의 자 : 이준석 · 천하람 · 이주영
김대식 · 김용태 · 이종배
모경종 · 최형두 · 조인철
김상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,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.

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).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중 “연구장려금의 지원”을 “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<u>연구장려금의 지원 등</u>) ① (생략) <신설> ② (생략)	제20조(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<u>지원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에 있어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